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4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1행정부

판 결

사 건 (춘천)2017누47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구합51694 판결

변론종결 2017. 9. 20.

판결선고 2017. 10. 18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6. 8. 25.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92,160,000원[등록면허세 320,000,000원, 가산세(일반무신고) 64,000,000원, 가산세(납부불성실) 8,160,000원], 지방교육세 65,632,000원[지방교육세 64,000,000원, 가산세(납부불성실) 1,632,000원]의 각 부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4

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재호

판사 박성구

판사 박병규